

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1. 제안이유

강북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을 설립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재단의 설립목적과 재단의사업 (제1조~제4조)
- 나. 재단의 재산 및 정관에 관한 규정(제5조~제6조)
- 다. 재단의 임원, 이사회, 직원 등에 관한 규정(제7조~제11조)
- 라. 재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규정(제12조~제14조)
- 마. 재단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정(제15조~제17조)
- 바. 재단의 지도·감독,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
(제18조~제2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지역문화진흥법
 - 2)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박 겸 수

2016년 5월 20일

3) 민법

나. 예산조치: 필요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(2015.10.2~2015.10.22)결과, 의견없음

2) 부패영향평가결과, 원안 동의

3) 성별영향평가결과, 원안 동의

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1183호

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『지역문화진흥법』 제19조, 『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·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『민법』 등 재단법인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설립) 재단은 「민법」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제4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구립 문화공연시설 및 문화예술단체 운영·관리
2. 문화예술의 창작·보급 및 교육·연구
3.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, 추진 및 연계·교류
4. 문화예술진흥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
5.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
6.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강북구(이하 “구”라

한다)의 출연금, 기부금,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제6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과 명칭
2. 사무소의 소재지
3. 출연금
4.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
5.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
6.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7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8. 해산에 관한 사항
9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10.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.

제7조(임원의 구성)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.

②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한다.

③ 당연직 이사는 구의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.

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.

⑤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로 공개모집을 통해

구청장이 임명한다.

⑥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8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·감독 할 수 있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9조(임원의 임기) ①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된다.

③ 선임직 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되,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이사회)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,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,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

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직원의 임면) 재단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.

제12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13조(수익사업)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14조(사업의 대행)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.

제15조(회계연도)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6조(운영재원)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, 재단사업 수익금,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7조(결산)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8조(지도·감독 등)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1.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
2. 임직원의 채용,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3. 임금, 성과금,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의 재산의 취득·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제19조(검사·보고 등)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적어도 3년마다 재단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.

제20조(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)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1조(공무원의 파견)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2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